혼합형퇴직연금 설정 및 운영계약서

the strength of the foundation base, knowing that it e as a whole. Tending the garden, we watered that spossible and delicious ripe fruit. In the network a strong foundation for our future development and usiness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the important part of forming a spossible should be spossible should be

t to pay for quality here. Judge for yourself when the perly introduce themselves and their talents to the y those candidates who have relevant skills, specialty, 사 용 자 |

운용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The truth is repeatedly in need to pull him, it must that networ person gets interview. A experience,

The truth is obvious, as always, nevertheless, suin repeatedly heard the opinion of different distribuneed to pull and wait for him to invite the busine him, it must immediately sign! I too once though that network marketing does not pay the amoun person gets a job, he would face the need to projinterview. Any self-respecting company hires onle experience, desire to work, etc.

BUSINE

affects the strength and durability of the structur

seedlings and fertilizer use, that they gave as much

business must also remember that we are laying prosperity, so the selection of candidates in the b

11 10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에 거쳐 제공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설정 및 운영 계약서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른 가입지에 대한 둘 0	상의 퇴	직연금자	도(이 계약에서 "혼합형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법 인 명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
와 한국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혼합형 제도의 운용 및 지산관리계약의 세탁	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	내다.	

제1조(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하나의 회사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을 함께 체결(이 계약에서 "혼합형 계약"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퇴직연금 시업지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 시용지는 해당 퇴직연금시업지와 혼합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조(사용자의 협조의무)

사용자는 혼합형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혼합형 퇴직연금 규약의 제출)

-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 수리된 혼합형 퇴직연금 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 및 확인서류를 혼합형 계약을 체결할 때 회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시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시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흔합형 제도의 설정 비율)

- ① 혼합형 제도의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설정비율의 변경은 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능합니다. 단, 설정비율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의 비율을 이전의 비율보다 작은 비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

- ① 회사는 혼합형 제도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구분하고, 해당 적립금에 각 제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정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② 회사는 사용자가 혼합형 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재정검증)

회사는 혼합형 제도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비율을 한도로 하여 재정검증을 시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혼합형 제도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신관리(신탁)계약서,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20 년 웍 익

